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9월 12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9월 13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9월 26일

제20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2016년 10월 20일

제20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김 휴 진

나. 제안이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대행료 정산 및 환수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정산 및 환수규정 신설(안 제9조의2)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감사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회계과와 합의되었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장 학 곤

○ 본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정산 방법을 총액확정계약에서 톤당 단가와 실제 수집·운반 실적에 따른 지급으로 변경하고 환수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조문과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